

직 제 규 정

전문개정	2004. 5. 4
개정	2004.10.25
개정	2004.12.29
개폐	2005. 7. 7
개폐	2005. 9. 2
개정	2006.12. 8
개폐	2007. 1.15
개정	2008. 1.14
개정	2009. 2.10
개정	2011. 3.29
개정	2012. 2.16
개정	2012. 9. 4
개정	2013. 1.30
개정	2014.10.31
개정	2015. 4. 3
개폐정리	2015. 6.30
개정	2015.12.10.
개정	2017. 2.14
개폐정리	2017. 4. 6
개정	2017. 8.28
개정	2017.11.27
개정	2018. 4.2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조직, 직원, 직무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조직”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을 말하며, 그 구성단위를 조직단위라 한다.

2. “직책”이라 함은 보직을 일컫는 말로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.
3. “직무”라 함은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배분된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, 의무 및 권한의 집합을 말한다.
4. “부서”라 함은 실·처(연구원 포함)와 지사, 센터를 말한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., 2013.1.30., 2017. 8.28>
5. <삭제 2006.12.8>
6. “영업부서”라 함은 지사, 센터 및 출장소 등 영업조직 및 장소를 말한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13.1.30>
7. <삭제 2006.12.8>
8. <신설 2005.9.2><삭제 2013.1.30>

제3조(적용) 직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조 직

- 제4조(직제의 편성)** ① 직제는 직능의 분화에 따라 구분되는 조직단위로 편성하며, 조직단위로서 본부, 실·처(연구원 포함), 지사, 센터 등을 둔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11.3.29., 2013.1.30., 2017. 8.28>
- ② 공사에는 경영전략본부, 금융사업본부, 자산관리본부, 주택도시기금본부, 사장 직속기구인 홍보비서실, 감사위원회 직속기구인 감사실을 두며, 각 본부 소속하에 부서를 둔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11.3.29, 2012.9.4., 2013.1.30., 2014.10.31., 2015. 4. 3, 2015.12.10., 2017.11.27., 2018. 4.27><개폐정리 2015. 6.30>
- ③ 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역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, 2013.1.30>
- ④ 사장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·처 또는 팀 단위의 임시조직 또는 협의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29, 2013.1.30>
- ⑤ 출장소는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⑥ 공사의 조직도는 [별표1]과 같다.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5조(본부의 편성) ① 각 본부는 다음 각목의 부서로 구성한다.

1. 경영전략본부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07.1.15, 2009.2.10, 2012.2.16., 2012.9.4., 2015.12.10>
 - 가. 기획조정실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>
 - 나. <개정 2015.12.10.><삭제 2017.02.14.>
 - 다. 일자리창출전략처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., 2017.11.27>
 - 라. 인사처<개정 2011.3.29., 2013.1.30>
 - 마. 경영관리처<개정 2017.02.14., 2017.11.27>
 - 바. 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><삭제 2018. 4.27>
 - 사. 정보운영처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>
 - 아. 기금정보처<신설 2017.11.27.>
 - 자. 주택도시금융연구원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, 2017. 8.28>
 - 차. <삭제 2015.12.10., 2017.02.14.>
 - 카. <삭제 2015.12.10., 2017.02.14.>
 - 타. <삭제 2015.12.10., 2017.02.14.>
2. 금융사업본부<개정 2005.9.2, 2006.12.8, 2008.1.14, 2009.2.10, 2012.2.16, 2013.1.30>
 - 가. 금융기획실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>
 - 나. 심사평가처<개정 2011.3.29., 2013.1.30., 2015.12.10>
 - 다. PF금융1센터<개정 2012.2.16, 2013.1.30>
 - 라. PF금융2센터<개정 2012.2.16, 2013.1.30>
 - 마. 정비사업금융1센터<개정 2015.12.10., 2017.02.14.>
 - 바. 정비사업금융2센터<신설 2017.02.14.>
 - 사. 서울북부지사<개정 2013.1.30., 2017.02.14.>, <개 폐정리 2017.04.06.>
 - 아. 서울동부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, <개 폐정리 2017.04.06.>
 - 자. 서울서부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, <개 폐정리 2017.04.06.>
 - 차. 서울남부지사<개정 2013.1.30., 2017.02.14.>
 - 카. 부산울산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
 - 타. 대구경북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
 - 파. 광주전남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
 - 하. 대전충남지사<개정 2013.1.30, 2017.02.14.>

- 거. 경기지사<신설 2014.10.31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- 너. 강원지사<신설 2014.10.31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- 더. 충북지사<신설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- 러. 전북지사<신설 2013.1.30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- 머. 경남지사<신설 2013.1.30.>, <개정 2017.02.14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- 3. 자산관리본부<신설 2005.9.2.><개정 2006.12.8, 2007.1.15, 2008.1.14., 2013.1.30., 2015.12.10., 2017.11.27>
 - 가. 채권관리실<개정 2011.3.29, 2013.1.30>
 - 나. 보증이행처<개정 2011.3.29, 2013.1.30>
 - 다. 서울북부관리센터<개정 2013.1.30>
 - 라. 서울동부관리센터<개정 2013.1.30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 - 마. 서울서부관리센터<개정 2013.1.30.>, <개폐정리 2017.04.06.>
 - 바. 영남관리센터
 - 사. 중부관리센터

4. 주택도시기금본부<신설 2015. 4. 3><개정 2017.11.27.>

- 가. 기금기획실<신설 2015. 4. 3>
- 나. 도시재생기획처<신설 2017.11.27.>
- 다. 도시재생운용처<신설 2017.11.27.>
- 라. 임대주택지원처<신설 2017.11.27.>
- 마.<삭제 2015.12.10.>
- 바. 도시재생금융1센터<신설 2017.11.27.>
- 사. 도시재생금융2센터<신설 2017.11.27.>
- 아.임대주택금융1센터<신설 2015. 4. 3>, <개정 2017.02.14., 2017.11.27.>
- 자.임대주택금융2센터<신설 2017.02.14.><개정 2017.11.27.>

- ②홍보비서실은 사장의 직속기구로 한다.<신설 2018. 4.27>
- ③<삭제 2015.12.10.>
- ④감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 한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>
- ⑤<신설 2005.9.2, 삭제 2006.12.8>

제6조(분장업무) ①본부장은 본부내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05.9.2, 2006.12.8>

②본부와 부서별 분장업무 및 업무관할구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05.9.2, 2013.1.30>

제3장 직원 및 직무

제7조(직원의 구분 및 정원) ①직원은 관리직원, 계약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인력운용상 필요에 따라 기술직원, 전산직원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.<개정 2005.9.2>

②직원의 직급 및 직책별 정원과 부서별 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1.30>

제7조의2(집행임원) ①경영관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정 직원으로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2.10>

②집행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9.2.10>

[본조신설 2005.9.2]

제8조(직책) ①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.

②부서에는 부서장을 두며, 그 소속하에 팀장을 둘 수 있다. 또한 부서내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역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6.12.8, 2011.3.29, 2013.1.30>

③직급별 직책부여기준은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

제9조(직무) ①조직단위의 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직원은 소속 조직단위의 장을 보좌하고, 그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③팀장 또는 역은 소속 조직단위의 장을 보좌하고, 그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, 팀장 또는 역의 명칭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3.29>

제10조(직무의 위임) ①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직무대행) ①조직단위의 장에 결원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둘 수 있다.

②조직단위 장의 사고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차하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소관 본부장이 직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2조(사장에 대한 위임사항)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

1. 지사·센터의 명칭 및 업무구역<개정 2005.9.2, 2013.1.30>
2. 부서내 팀의 정수 및 편제<개정 2006.12.8, 2011.3.29, 2013.1.30>
3. 출장소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4. 본부별 소관부서의 지정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대전지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지점은 대전지점을 설치하여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4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및 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 <2004.10.25>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4.12.29>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7.7>

이 규정은 200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9.2>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12.8>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7. 1.15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문서규정 등 다른 사규의 “고객지원팀”을 “총무팀”으로 한다.

부 칙 <2008.1.14>

이 규정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2. 10>

이 규정은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 3. 29>

이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2. 16>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9. 4>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1. 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센터, 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금융센터, 경남지사 및 전북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4. 11. 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사 및 강원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5. 4. 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금융센터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5. 6.30>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2.10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4.6>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7.11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금융1센터 및 도시재생금융2센터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8. 4.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(제4조 관련)<개정 2004.10.25, 2004.12.29, 2005.7.7, 2005.9.2, 2006.12.8, 2007.1.15, 2008.1.14, 2009.2.10, 2011.3.29, 2012.2.16, 2012.9.4., 2013.1.30., 2014.10.31., 2105. 4. 3, 2015.12.10., 2017.2.14., 2017.8.28., 2017.11.27., 2018. 4.27>, <개폐정리 2017.4.6.>

개 편 조 직 도

■ 4본부 6실 10처 1연구원 8금융센터 13지사 5관리센터

터

